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02

발의연월일: 2024. 9. 5.

발 의 자:유상범·송석준·조배숙

박준태 • 곽규택 • 신동욱

엄태영 • 구자근 • 박충권

이철규 · 김미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출·입국한 기록 등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신청 근거를 규정하면서 가정폭력사건 관계자의 정보 접근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가정폭력행위자가 현행법의 공백을 악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을 신청하더라도 거부할 근거가 없는 상황임.

2020년 8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6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제1항이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사실상 자유롭게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여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정폭력가해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2021년 12월 28일 「주민등록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그침으로써 현행법의 출 입국 정보 및 외국인등록 정보에 대한 위헌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 은 상황임.

이에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 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제한이나 그 제한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발급·열람 제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1항 및 제3항·제4항·제5항신설).

법률 제 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 본문 중 "법무부령"을 "본인 및 그의 법정대리인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법무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이하 "가정폭력행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발급・열람을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 1.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의 제1항 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
- 2.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의 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 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사실증명의 발급 ·열람 제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 ·군·구 및 읍·면·동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 항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3항 각 호

- 의 발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열람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발급·열람 제한 및 해지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정폭력피해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의 발급·열람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전에 발생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행 개 정 안 혅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및 람) ①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 람) ① -----서의 장,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읍·면·동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 유무에 대하여 법무부령 -----본인 및 그의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 법정대리인 그 밖에 법무부령 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 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법무부 있다. 다만, 출국 또는 입국한 궝----. ---사실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만 이 법의 절차에 따른 출국 또는 입국 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피해자(이하 "가정폭 력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대 리인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이하 "가정폭 력행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신 설>

<신 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발급·열람을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 1.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미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의 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의 발급
- 2.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의 제2항 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 명의 발급 및 열람
- 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제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및 읍·면·동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그대리인에게 제3항 각 호의 발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열람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가정폭력행위자 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발

급・열람제한및해지신청절차,제출서류등에필요한구체적인사항은법무부렁으로정한다.